

소송허가결정 고지서

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5라656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아래 2항의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이 되므로, 다음 사항을 잘 읽어 보시고 제외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표시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 1. 양일남
(대표당사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67, 215동 1502호(장안동, 래미안장안2차아파트)

2. 최영미

김포시 김포한강2로 168, 104동 901호(장기동, 고창마을
신영지웰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김주영, 송성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431호(서초
동, G-Five Central Plaza)

피 고 : 로얄 बैं크 오브 캐나다(The 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 베이 스트리트 200(200 Bay Street,
Toronto, Ontario, Canada)

대표자 사장 고든 엠 닉슨(Gordon M. Nix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이해광, 정진영, 이상윤, 박철
희, 은정민, 고태혁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내자동, 세

양빌당)

2. 총원의 범위

한화증권 주식회사가 2008. 4. 25.경 발행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를 매수하였다가 만기에 상환 받은 사람들

3. 청구의 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3,259,5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청구원인의 요지

가. 한화증권 주식회사(이하 '한화증권'이라 한다)는 2008. 4. 25.경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보통주와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10호'(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3개월 단위의 조기 및 만기 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 모두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포스코 보통주는 494,000원, 에스케이 보통주는 15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기준가격의 90%, 85%, 80%, 7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면 액면금에 연 22%의 수익금을 더하여 상환하고,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게 설계된 상품이다.

나. 한화증권은 2008. 4. 25.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와프(Swap)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총 발행규모는 687,660개, 총발행액은 6,876,600,000원(개당 액면금 10,000원), 총 투자자는 약 437명이다. 대표당사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은 그 발행일 무렵에 한화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주가연계증

권을 매수하였다.

라.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 4. 22. 에스케이 보통주는 만기상환기준가격(기준가격의 75%인 119,625원) 이상인 120,000원에서 12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장 종료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량매도 행위’라고 한다), 그 결과 에스케이 보통주의 종가는 119,000원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대표당사자들 비롯한 투자자들은 만기일인 2009. 4. 27. 이후 한화증권으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투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았다.

마. 이 사건 대량매도행위는 기초자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의하여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바. 만약 피고의 부정거래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수익금지급조건을 충족하므로, 총원들은 투자원금의 1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피고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투자원금의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았을 뿐이므로 투자원금의 47.4%(= 122% - 74.6%)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으로 모집된 투자원금은 총 6,876,600,000원이므로, 피고가 총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그 중 47.4%에 해당하는 3,259,508,400원이다.

사. 피고는 총원들에게 3,259,5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0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제외신고

가. 제외신고

- (1) 제외신고는 구성원(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이 위 증권 관련집단소송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 (2)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접 위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소송의 판결 및 소송상 화해 등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즉,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3) 한편 구성원 중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717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0. 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4나5540호로 소송계속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8조 제2항은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제외신고의 기간 및 방법

제외신고를 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2016. 5. 27.까지(위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내) 제외신고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같은 법원 2010가합1604 사건 담당재판부)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신고서 양식은 첨부된 문서와 같으며,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uwon.scourt.go.kr)의 「양식」란의 ‘민사재판’ 항목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구성원의 권한

- (1)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착수금은 0원으로 하고, 성공보수는 판결, 화해, 조정성립 등으로 인정되는 추가 만기상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포함) 중 1심에서 성공 시 15%(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 2심에서 성공 시 20%, 3심에서 성공 시 24%로 약정되었으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1)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 (2)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는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사 이은희

제외신고서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604 증권관련집단소송
원 고 1. 양일남
(대표당사자) 2. 최영미
피 고 로얄 बैं크 오브 캐나다(The Royal Bank of Canada)
대표자 사장 고든 엠 닉슨(Gordon M. Nixon)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의 구성원 (—)은
(는) 위 사건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제외신고를 합니다.

2016. . .

구성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귀중

◇유의사항◇

1.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성원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